

이사보수한도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제한 판례 및 시사점

1. 판례의 배경: 남양유업의 임원보수한도 결의와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남양유업의 지난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의안(이하 "본건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많은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의결권 있는 주식 총 679,712주 중 약 54.7%인 372,107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홍 전 회장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현행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양유업의 상근감사는 2023년 5월 '홍 전 회장이 본건 안건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홍 회장 측도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선고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 및 2025년 1월 선고된 2심(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 모두 홍 전 회장이 본건 안건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2025년 4월 25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함에 따라 홍 전 회장 측의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하 "본건 판결").

본건 판결은 통상적으로 이사 개개인의 보수 승인 결의에서만 해당 이사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고, 전체 보수한도 승인에 대하여는 이사들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 온 기존 실무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¹⁾

2. 판례 법리의 정리: 보수한도 승인에도 이사의 특별한 이해관계 인정

본건 판결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한 기존 판례의 해석을 확장하여, 이사보수한도 승인 결의에도 개별 이사들의 특별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1) 실무 관행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이사인 주주는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해 특별이해관계(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 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결론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① '특별한 이해관계'의 판단기준 재확인 및 적용 확대

대법원은 과거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을 통해 '특별한 이해관계'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실무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왔습니다.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대법원 기준을 인용하면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사는 위 결의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ii)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사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를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정하는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홍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실제로 지급된 보수가 이사보수한도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1심 판결의 일부 논거를 보완하였고, 대법원이 홍 전 회장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이사보수한도 승인 결의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② 기존 실무 관행과의 충돌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는 '개별 이사의 보수 승인'과는 달리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한도 승인'까지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 하에 관행적으로 이사 전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본건 판결은 기존의 실무 관행을 부정하고, 보수한도 승인의 경우에도 각 이사가 개별적으로 수혜 가능성이 있다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의 주주총회 실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남양유업의 후속 소송 진행 상황: 남양유업의 보수반환 청구 및 홍 전 회장의 임원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남양유업의 감사는 남양유업을 대표하여 2023년 6월 홍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회장 재임 중 회사가 부담한 과징금 및 벌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홍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 반환분을 합하여 약 52억원을 남양유업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본건 보수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0778).

한편, 홍 전 회장은 2024년 3월 남양유업 사내이사 임기가 종료되어 회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남양유업이 임원 퇴직금 산정시 월보수액에 근속연수와 배수를 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된 본건 안건에 따른 보수를 위 산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홍 전 회장의 예상 퇴직금은 약 165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홍 전 회장은 자신이 지급받을 퇴직금이 약 444억원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6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본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1532).

본건 보수반환 소송 및 본건 퇴직금 소송은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나, 본건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경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건 판결이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의 엄격한 취지를 확인함에 따라 특히 상장회사 및 그 이사 지위를 가지는 대주주들은 주주총회 운영 시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이사 보수 결정 프로세스의 정교화
- 정관 및 내부규정의 정비
- 주주총회 운영절차 개선(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의결정족수 등 사전 점검)
- 공시 및 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

특히 이사 보수 결정 프로세스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 이사회 책임성 확보 등 기업지배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영역인 만큼, 보수위원회 운영 강화 및 외부 검토 절차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 Areas

[기업지배구조](#)[기업법무 및 금융](#)

Contact

김건 변호사

02-528-5308

gkim@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02-528-5150

hyunjeong@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위춘재 변호사

02-528-5973

cjwee@yulchon.com

이민재 변호사

02-528-6141

minjaelee@yulchon.com

이채영 변호사

02-528-6145

cylee@yulchon.com

오용석 고문

02-528-6436

yongsukoh@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